

「학술정보원(도서관) 자료 및 시설 이용 내규」 신구조문대비표

2020. 6. 8. 개정 판 (시행 2018. 3. 1.) → 2023. 2. 13. 개정 판 (시행 2023. 3. 1.)

바뀜 2 · 신설 0 · 삭제 0 · 번호 변경 0

공식 원본 law.syu.ac.kr · <https://suleap.syu.my/r/218/compare?from=977&to=1416> · 내려받은 때 2026. 10. 21. 오후 2:58:15 · 밑줄은 바뀐 부분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대출책수 및 기간) ① 자료의 대출책수 및 기간은 [별표 1]과 같다. ② 대출자료는 1회에 한하여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다만, 지정자료, 예약자료이거나 연체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대출기간 연장 및 재대출을 할 수 없다.	제3조(대출책수 및 기간) ① 대출의 대출책수 및 기간은 [별표 1]과 같다. <u>〈개정 2023-02-13〉</u> ② 대출자료는 1회에 한하여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다만, 지정자료, 예약자료이거나 연체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대출기간 연장 및 재대출을 할 수 없다.
제17조(방문자 출입) 지역주민 등 외부인이 자료열람 및 연구목적으로 열람실 이용을 요청할 경우 신원파악을 확실히 하고 방명록에 기록 관리한다. [별표 1] 대출책수 및 대출기간 구분 대출책수(권) 대출기간(일) 학부생 5 10 대학원생 10 15 교원(전임) 20 90 교원(비전임) 10 15 직원 10 30 조교 5 15 휴학생 3 10 도서관이용증소지자 3 10	제17조(방문자 출입) 지역주민 등 외부인이 자료열람 및 연구목적으로 열람실 이용을 요청할 경우 신원파악을 확실히 하고 방명록에 기록 관리한다. [별표 1] 대출책수 및 대출기간 구분 대출책수(권) 대출기간(일) 학부생 5 10 대학원생 10 15 교원(전임) 20 90 교원(비전임) 10 15 직원 10 30 조교 5 15 휴학생 3 10 도서관이용증소지자 3 10 <u>명예 회원(정년, 희망퇴직 교원 및 직원)</u> <u>10</u> <u>30</u>

개정문 (참고본)

원본(law.syu.ac.kr)에 개정문이 없어, 직전 판과의 신규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.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.

「학술정보원(도서관) 자료 및 시설 이용 내규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"자료"를 "대출"로 하고, "같다."를 "같다. <개정 2023-02-13>"로 한다.

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7조(방문자 출입) 지역주민 등 외부인이 자료열람 및 연구목적으로 열람실 이용을 요청할 경우 신원파악을 확실히 하고 방명록에 기록 관리한다.

[별표 1] 대출책수 및 대출기간

구분

대출책수(권)

대출기간(일)

학부생

5

10

대학원생

10

15

교원(전임)

20

90

교원(비전임)

10

15

직원

10

30

조교

5

15

휴학생

3

10

도서관이용증소지자

3

10

명예 회원(정년, 희망퇴직 교원 및 직원)

10

30

부 칙

이 내규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